EU - DAC7 관련 합의 도출 및 DAC8 작업 착수

■ **EU는 2020년 11월 21일 강제정보보고 행정협력지침(DAC7)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였고, DAC7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국의 내국법령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[1)]**

○ EU 집행위원회는 OECD 모델 보고 규칙의 대상활동(교통, 부동산 자산 임대, 배달 및 법률 업무와 같은 개인 서비스)에 더하여 상품 판매, 투자, 크라우드 펀딩(crowd funding)과 관련한 대출도 포함하여 대상활동으로 제안하였음

- 일부 회원국은 상품 판매를 포함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합의안은 크라우드 펀딩 관련 대출만 제외함

○ 적용 영역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역외 플랫폼을 포함하였으나 회원국은 규칙 적용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음

- 합의안에 따르면 EU 외의 관할국과 EU 회원국 사이에 동일한 정보를 교환할 것을 정한 적절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역외 플랫폼은 EU 회원국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
- 이 조항은 역외 플랫폼이 설립된 EU 외의 관할국이 DAC7과 동등한 수준의 강제정보보고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

■ **EU는 2020년 11월 23일 DAC8과 관련한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함[2)]**

○ EU 집행위원회는 조세투명성 강화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행정협력지침(2011/16/EU)의 적용 대상을 가상자산(crypto assets)과 사이버머니(e-money)로 확대하여, 과세관청이 이를 과세 목적으로 적절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작업(DAC8)에 착수함

1) Tax Notes International, "EU Reaches Consensus on DAC 7," November 30, 2020, pp.1224~1225.
2) Tax Notes International, "EU to Expand Exchange To Cryptoassets, E-Money Under DAC 8," November 30, 2020, p.1226.

-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도입한 '디지털 재정 전략(digital finance strategy)'에 따라 DAC8과 관련한 작업을 하고, 시장에 기초한 규제 수단 및 법 제도를 강화하여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고자 함

<자료 수집 및 정리: 김재경 변호사>